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제1329호 2018. 4. 16.(월)

공 고

- 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 ----- 2
-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 3

기 타

- 시정알림판 ----- 11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18-578호

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18. 4. 16.

목 포 시 장

1. 제 목 : 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
2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
3. 공고기간 : 2018. 4. 16.~2018. 4. 30.(15일간)

4. 공고내용

일련 번호	대 지 위 치 (목포시)	건축주 (동의자)	허가번호	도로지정 현황			이해관계인 동의여부
				길이 (m)	너비 (m)	면적 (㎡)	
1	목포시 대양동 190	김봉찬	2018-건축행정과- 신축허가-26	3.5	0.2	0.7	동의
2	목포시 연산동 619-17	김재형	2018-건축행정과- 신축허가-30	29	4	5	동의
3	대양동 20-3	고남일	2018-건축행정과- 신축신고-4	20	2.5	19	동의
4	이하빈칸						
5							

5. 공고방법 : 시보, 게시판, 홈페이지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에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로 문의(☎061-270-3472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공고 제2018-585호

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『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4. 16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중인 「목포시 시정모니터」의 시민 소통 활동을 장려하고 모니터링 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정모니터 신분증 발급 근거 및 신분증 양식, 발급 절차 등을 신설하여 시정모니터 신분증 운영기준을 명확히 함 (안 제11조)
- 신분증 사용 목적과 신분증 대여·양도 금지 규정 신설 (안 제12조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 부서 의견

- 부패영향 평가(감사실)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분석 영향 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사항 없음

7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8. 예산상황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9. 입법예고 : 2018. 4. 16. ~ 5. 6.(21일간)

10. 사전 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 없음

11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6일까지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○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자치행정과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79), 직접방문 등

12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 061-270-3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신분증 발급)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의 신분증 양식과 같다.

③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④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.

⑤ 신분증을 분실·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신분증 사용) 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·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·양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비행위)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시정모니터 신분증 양식

(앞면)

↑	← 5.4cm →
	시정모니터
8.5 cm	사 진
	성 명
	[위촉기간 : ~]
↓	목 포 시

(뒷면)

발급번호
성 명 :
생년월일 :
1. 본 증을 소지한 시정모니터에 대해서는 목포시 공무원은 모니터 활동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2. 본 증은 시정모니터 활동의 신분 확인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. . .
목 포 시 장 직인
☎ 061) 000-0000

[별지 제2호서식]

시정모니터 신분증 (재)발급 신청서

1. 성 명 :
2. 생 년 월 일 :
3. 주 소 :
4. 신 청 사 유 :
5. 첨 부 : 사진(3cm 4cm) 2매, 반납 신분증

위와 같이 시정모니터 신분증의 발급·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목포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시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

결 재			발급 번호	발 급 년월일	성 명 (생년월일)	주 소	신 규 재발급	재발급 사 유	회수 여부	사진	비고
담당자	담 당	과 장									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접수처리)①·② (생 략)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접수처리)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11조(신분증 발급) ① 시장은 시정 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신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 지 제1호의 신분증 양식과 같다. ③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 3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야 한다. ④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 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 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 어야 한다. ⑤ 신분증을 분실·훼손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2호 신분증 발급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2조(신분증 사용) ① 시정모니터 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·제보를 위 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·양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.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시 정 알 림 판

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



- 일 시 : 2018. 4. 13.(금)
- 장 소 : 목원동 트윈스타(목포시 수문로 32) 내 행정타운 3층
- 치매안심센터? 교육상담실, 검진실, 프로그램실, 치매 가족쉼터 등을 갖추고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치매 통합관리 업무 수행

“ 목포시민의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”

치매안심센터 ☎ 061-270-4271~4

목포시 시민 무료 정보화교육

- 교 육 명 : 엑셀 문서작성
- 접수기간 : 2018. 5. 1.(화)~5. 6.(일)
- 교육기간 : 2018. 5. 14.(월)~5. 25.(금) 10:00~12:00 [10일]
- 접수방법 :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또는 전화접수
- ※ 인터넷 접수 : 목포시청 홈페이지 ⇒ 생활복지 ⇒ 시민교육정보
- 수강료 및 교재 : 무료
- 신청자격 : 목포시민이라면 누구나

※ 과정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으며, 신청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는 교육과정이 취소 될 수 있음



정보통신과 ☎ 061-270-8507

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가족 사진 및 표어 공모전 개최

- 공모기간 : 2018. 4. 9.(월)~5. 7.(월)
- 응모자격 :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
- 공모부문 :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가족 사진 및 표어
- 공모방법 :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진과 함께 담당자에게 메일(och103@korea.kr)로 전송
- 결과발표
 - 발 표 일 : 2018. 5. 31.(목) 예정
 - 발표방법 :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(chs.cdc.go.kr) 게시 및 입상자 개별 통보



건강증진과 ☎ 061-270-3699

시 정 알 림 판

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



- ★ 2018. 5. 22.(화)[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]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.
- 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: 2018. 6. 13.(수) [투표시간 :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]
- ★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**6. 8.(금)~6. 9.(토)** 사전투표 가능
 - 투표시간 : 오전6시~오후6시
 - 투표장소 : 전국에 설치된 3,500여개 사전투표소
 - 준 비 물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복지카드, 외국인 등록증, 자격증, 학생증 등)

폐형광등 & 폐건전지 분리배출 안내

- ★ 형광등 1개에는 수은이 5~20mg이 들어있고, 폐건전지에는 수은, 카드뮴, 니켈, 망간 등 중금속이 다량 들어있어 함부로 버리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.
- ★ 오염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·수·축산물 등을 통해 다시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되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.

○ 폐형광등 배출요령

- 아파트 : 폐형광등이 적당량 모이면 시에 수거 요청(270-8682)
- 일반주택 :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파트의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
- 전기·광고업체 : 대양동 위생매립장 입구 재활용선별장에 직접 운반하여 배출

○ 폐건전지 배출요령

- 아파트 : 우편물 반송함에 적당량 모이면 시에 수거 요청(270-3656, 8076)
- 일반주택 : 가까운 주민센터나 학교의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
- 병원·기업체·공공기관·어업인 :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여 일정량이 모이면 시에 수거요청

자원순환과 ☎ 061-270-3656